

2022년도 1/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

2022. 6.

감사위원회

1. 세종문화회관 기관운영 종합감사

1. 감사목적

- 세종문화회관의 조직·인사, 예산·회계, 대관·임대 등 주요사업 전반을 감사하여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시민 문화 복지 구현에 기여

2. 추진내용

- 대상기관 :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문화정책과, 박물관과
- 감사기간 : '21.04.29.(목) ~ 05.21.(금)(기간 중 15일)
 ※ 예비감사 : 04. 22. ~ 04. 28.(5일)
- 감사인원 : 공공감사3팀장 등 8명(공익감사단 3명 포함)
- 감사범위 : 2017년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인사·조직 관리 및 예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 주요사업 및 대관·임대 업무의 적정성
- 시 위탁사업 집행 및 위탁시설 관리 적정성 확인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 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정 (환수)	감 액	재시공	기 타					
28	23	140,553	-	1	9	4	1	-	4	10	-	-	9	-
			(-)	(1)	(140,553)	(124,680)	(15,873)	(-)	(-)	(22)	-	-	-	(-)

총 평

- (재)세종문화회관 기관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2021. 4. 29.부터 5. 21.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단은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 구현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나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세종문화회관 지하1층 상업공간에 대한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명도 집행 시기를 연기하는 동안 임차인은 '21.6.15.부터 임대장소에서 영업을 재개하는 등, 서울시 공유재산 불법 점유로 인하여 서울시 및 회관의 재산권 침해와 공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 극단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연극교실의 강사로 참여하는 단원들의 출연수당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 없이 지급되는 등 출연수당 지급을 소홀히 한 바가 있었음.
 - 또한 세종문화회관은 '19년 이월 잉여금과 '20년 서울시 추경으로 받은 2,596백만 원 중 1,400백만 원을 회관 수입보전 목적으로 장부상으로만 처리하여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도 영향을 주는 등 회계질서 문란을 가져옴.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함은 물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은 경중에 따라 신분상 조치하고 향후 동일·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 현재 28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17건은 조치 완료 되었고 나머지는 조치 진행 중에 있음.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지하1층 상업공간 대 부계약 종료에 따른 명도집행 미이행	시정요구	○ 지하1층 상업공간 명도집행 신속히 추진	조치중
			○ 신분상 조치	완료
2	극단 시민연극교실 단원 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요구	○ '20년 공연수당 1,750천 원은 환수 및 교육실시	조치중
		주의요구	○ 신분상 조치	완료
3	순세계잉여금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부적정	주의요구	<세종문화회관> ○ 예산집행 및 수입·지출 회계처리 관련 재규정 준수	완료
			○ 신분상 조치	완료
		통보	<시 공기업담당관> ○ 세종문화회관 경영평가 제출 자료를 재검토하여 실제 달성한 수입과 세출 집행 결과가 반영되도록 조치, 재발방지 방안 마련	완료
		통보	<시 문화정책과> ○ 예산,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담당자 교육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완료
4	신규임용자 호봉산정 시 학력인정 및 기간 중복 산정 부적정	통보	<시 문화정책과> ○ 타 투자출연기관과의 형평에 맞게 회관의 「호봉제 보수규정」 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완료
		통보	<세종문화회관> ○ 근무경력 이외 학력별 경력 산정이 되지 않도록 회 관의 「호봉제 보수규정」 개정	완료
		시정요구	○ 과다 지급된 호봉 2,623천 원을 반납처리, 해당 직원의 호봉 재확정 처리	조치중
5	퇴직자 공로연수 교육훈 련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통보	○ 서울시 및 타 출연기관 참고하여 편성하고, 서울시 공로연수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공로연수 취지에 맞는 항목에 대해서 집행	조치중
		주의요구	○ 직원교육 및 신분상 조치	완료
6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해 태로 인한 과태료 예산납 부 부적정	시정요구	○ 신속히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보험금은 세입처 리하고, 과태료 및 벌금 등이 예산에서 지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철저	완료
			○ 신분상 조치	완료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7	해외저작권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해외 예술인의 원천징수 납부 의무 불이행	시정요구	○ 미납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액 및 원천징수액 약 25,241천 원을 즉시 납부	조치중
			○ 신분상 조치	완료
8	기부금관련 자료관리 소홀 및 현물기부금 영수증 발행업무 부적정	통보	○ 기부금 자료 관리 철저 및 통합적인 기부금 관리 방안 마련 ○ 현물 기부재산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증빙서류를 근거로 발행하고 업무담당자 교육	완료
		주의요구	○ 경영본부 및 문화사업본부 부서경고	완료
9	삼청각 리모델링 시설보수 사업 예산관리 및 집행 부적정	주의요구	<시 박물관과> ○ 지도감독 철저 및 신분상 조치	완료
		시정요구	<세종문화회관> ○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세액 공제분 환급액 114,762천 원을 서울시에 반납	조치중
			○ 신분상 조치	완료
10	겸직 및 외부강의 시 복무 관리 소홀	주의요구	○ 겸직, 외부강의를 할 경우 복무지침에 맞게 하도록 교육 지도 철저	완료
			○ 신분상 조치	완료
11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등 물품관리 업무 소홀	주의요구	○ 정기 재물조사 실시 및 후속조치, 물품관리대장 관리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지도 감독을 철저	완료
			○ 신분상 조치	완료
		통보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회관 「물품관리규정」 소모품 품종 구분 기준 개정	조치중
12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주의요구	○ 관련업무 철저	완료
			○ 신분상 조치	완료
13	삼청각 리모델링 및 개보수 공사 설계 및 정산업무 소홀	시정요구	<시 박물관과> ○ 과다계상된 공사비 15,873천 원 감액	완료
			○ 신분상 조치	완료
		통보	○ 진행중인 공사는 설계도서를 재검토하여 준공 전 예산낭비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완료
		주의요구	○ 신분상 조치	완료
14	아티스트라운지 조성공사 감독업무 및 설계변경 소홀	시정요구	○ 과다지급 된 공사비 5,544천 원 회수	조치중
			○ 신분상 조치	완료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5	컨벤션시설 조성공사 설계 및 설계변경 업무 소홀	주의요구	○ 설계 및 설계변경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업무 철저	완료
			○ 신분상 조치	완료
16	소규모 유지보수공사 시공 확인 및 내부보고 소홀	주의요구	○ 공사시방서에 임의로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는 조항은 삭제하고, 회관 공사감독 내규에 시공확인 및 검측업무 사항을 보완	조치중
			시정요구	○ 세종예술동 옥상방수 하자를 조속히 보수
		○ 신분상 조치		완료

□ 총평

- 2021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도급 대금·임금 등 체불예방을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8개 기관 14건 공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 대부분 건설공사장은 하도급 및 대금지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건설공사장에서 하도급지킴이 미사용, 노무비 부적정지급 등이 지적되었음

하도급지킴이 미사용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노무비 부적정 지급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부적정작성	전자인력관리제 미시행 등
138건	608건	79건	34건	14개소

- 또한 금번 추석 전 점검을 통해 12개 공사장에 대해 미지급 기성금 총 3,165백만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토록 합의하고, 지급완료 하였음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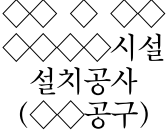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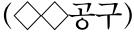
- 공사대금 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부적정사용: 7개소(138건)
 -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지 않고 노무비 지급: 2개소(53건)
 - 건설기계 대여대금 구분지급 의무 위반 등: 5개소(85건)
-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8개소(608건)
 - 법정 기재사항(임금액 등) 누락,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 계약서 미사용 등
- 노무비 부적정 지급: 2개소(79건)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및 작성 부적정: 3개소(34건)
 - 계약서 미작성 10건, 법정 기재사항 누락 24건
- 기타(하도급 계약내용 지연통보 등): 14개소
 - 전자카드 및 전자인력관리제 미시행: 4개소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지연발급 및 미발급: 3개소
 - 현장별 보증서 지연발급 및 안내문 미제시: 6개소
 - 하도급 계약내용 지연통보: 1개소

□ 조치사항



- 지적사항 총 31건 중 조치완료 24건, 조치중 7건이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관련 기관(발주부서)에 통보

□ 점검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서울교통공사: 4건(현지조치 4)

연번	공사명	관련 부서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시설 설치공사 ( 공구)	가부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미작성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예정	조치중
2			건설기계 대여대금 구분지급 의무 위반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예정	조치중
3			현장별보증서 지연발행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예정	조치중
4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예정	조치중

□ 도시기반시설본부 : 5건(현지조치 5)

연번	공사명	관련 부서	지적건명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전립공사	가부	근로자 노무비 지연지급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예정	조치중
2			하도급계약내용 지연통보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예정	조치중
3	서울  전립공사	가부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4			건설기계 대여대금 구분지급 의무 위반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5			현장별 지급보증서 안내문 미게시	현지조치	안내문게시 및 교육실시	조치 완료

□ 서울주택도시공사 : 4건(현지조치 4)

연번	공사명	관련 부서	지적건명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건설공사	가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지조치	계약서 작성 및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2			건설근로자 임금 미지급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3			현장별 보증서 지연발행 및 안내문 미게시	현지조치	안내문 게시 및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4	 개설 공사	나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예정	조치중

관악구청 : 2건(현지조치 2)

연번	공사명	관련 부서	지적건명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공원 ■■■■■■■■ 건설공사	가과	전자인력관리제 미이행	현지조치	2차분 공사 반영완료	조치 완료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지조치	보증서 발급 완료	조치 완료

동작구청 : 3건(현지조치 3)

연번	공사명	관련 부서	지적건명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 ▲▲▲▲▲▲ 시설 신축공사(▲차)	가과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2			전자인력관리제 미이행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3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미사용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도봉구청 : 1건(현지조치 1)

연번	공사명	관련 부서	지적건명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 △△△△ △△△사업 (△△△△△ 인근)	가과	전자인력관리제시스템 및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강북구청 : 5건(현지조치 5)

연번	공사명	관련 부서	지적건명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 □□□□□□ □□□□ 조성사업	가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구분지급 의무 위반	현지조치	이후 기성금액 구분지급 완료	조치 완료
2			현장별 보증서 지연발행 및 안내문 미게시	현지조치	안내문게시 및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3	2021년 관내 ■■■■■■ ■■■■(■■■■)■■■■ (연간단가)	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지조치	계약서 작성 및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4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	현지조치	계약서 작성 및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5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지급합의서 지연교부	현지조치	합의서 재작성 및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 성동구청 : 7건(현지조치 7)

연번	공사명	관련 부서	지적건명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 ▽▽ 공사 (장기계속, ▽차)	가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노무비 구분지급 위반	현지조치	계약서 작성 및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2			건설기계 대여대금 구분지급 의무 위반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3			현장별보증서 미발행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4	■■■■■ ■■■■■■■■■■ ■■■ 건립공사	나과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및 전자카드 미시행	현지조치	계약서 재작성 및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5			건설기계 대여대금 구분지급 의무 위반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6			현장별 보증서 관리 부적정 및 안내문 미게시	현지조치	안내문게시 및 교육실시	조치 완료
7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 완료

3. 2020년도 일상감사의견 이행실태 점검

1. 점검 목적

- 사업추진부서에서 일상감사 결과 제시된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일상감사 미반영 사유 등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추진내용

- 점검대상: '20년도 일상감사 의뢰한 888개 사업 중 492개 사업
- 점검기간: 2021. 1. 29.~3. 12.(기간 중 28일)
- 점검인원: 일상감사팀장 등 4명
- 점검내용: 일상감사 결과 제시된 의견 반영 여부 점검

3. 점검 중점

- 일상감사 결과 미반영으로 인한 민원·분쟁 발생사례 확인
- 일상감사 수범사례 발굴, 제도 운영 안내 및 개선 의견 수렴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총건 수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기타 (경고)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환수)	감액	기타					
14	0	0		0 (0)	0 (0)	- (0)		2 (0)			12		

□ 총 평

- '20.1.1.~12.31.까지 일상감사를 실시한 888개 사업 중 시정·보완 등 의견을 제시한 492개 사업 1,174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 이행을 완료한 492개 사업 중에서 478개 사업(대상 사업의 97.2%)은 정상적으로 일상감사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이행이 미흡한 14개 사업은 관련 규정을 사업담당자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원인으로 위법·부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음
 - 가 과장은 한강사업본부장이 계약을 의뢰한 '♡♡♡♡♡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일반입찰에서 제한입찰로 변경하면서 일상감사 재의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입찰공고를 하였고
 - 나 과장은 일상감사 실시한 '♡♡배수구역 우수토실(雨水吐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3,852백만 원)'에 대한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배수구역 우수토실개선사업 수리환경 모니터링 용역(1,395백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64% 감소되었고, 입찰참가자격이 변경되었는데도 일상감사를 재의뢰하지 않았으며
 - 다 과장은 '2020년 ◆◆◆◆ 안내단말기 설치사업'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 시 위원 명단을 익명으로 공개하는 등 10개 부서에서 11건의 평가위원 명단을 미공개하거나 익명으로 공개 또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음
 - 라 과장은 '2020년 ○○○○ 산업박람회 행사장 조성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단독입찰로 유찰된 경우에도 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제안서 평가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조치하고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점검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 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 고
01	입찰참가자격 변경공고에 따른 일상감사 재의뢰 조치 미이행	통보	완료	○ 조치완료 공문: 가과-173('22. 1. 3.)
02	일상감사 재의뢰 절차 미이행	통보	완료	○ 조치완료 공문: 나과-827('22. 1. 19.)
03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실시 후 평가결과 미공개, 위원명단 익명 공개 및 미공개	통보	완료	○ 조치완료 공문: 다과-689('22. 1. 13.), 하 과-47('22. 1. 4.), 파과-12471('21. 12. 31.), 카과-23679('21. 12. 30.), 바과 -4493('21. 12. 28.), 차과-1818('22. 1. 27.), 사과-719('22. 1. 19.), 아과 -706('22. 1. 18.), 타과-4265('21. 12. 30.), 자과-3336('22. 2. 4.)
04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없이 체 결한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요구	완료	○ 조치완료 공문: 가과-173('22. 1. 3.), 라과-6115('21. 12. 31.)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서울시 안전준비실태 점검

1. 점검배경 및 목적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대비,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준비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고자 함.

2. 추진내용

- 점검대상 : 노동정책담당관, 안전총괄과, 한강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식물원,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8개 사업장 샘플점검)
- 점검기간 : '21. 11. 10.(수) ~ 12. 15.(수) (기간 중 8일)
 ※ 자료수집기간: '21.11.10 ~ 12.3.
- 점검인원 : 안전감사1팀장 외 6명 (※ 외부전문가 3명)
- 점검범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안전준비실태 전반

3. 점검중점

-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적정 여부
- 중대재해 발생 대비 분야별 대응 매뉴얼 수립 및 적정 여부
- 기타 시설물 등 안전관리 적정 여부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권고	기관 경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화수)	감액	기타						
13									2		11			

□ 점검결과

가 조직·인력·예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흡

①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직접 채용) 등 인력 확보 미흡 [통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안전관리자)~18조(보건관리자),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에 따르면,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여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없음.¹⁾

[표 1]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사항

적용기준	의무사항	해당 기관 수
500명 이상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3개소 본청(의무), 상수도본부, 한강사업본부(권장)
300명 이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	12개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등)
50명이상 ~ 300명 미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30개소 (아동복지센터, 시립과학관 등)

- 그런데, 서울시 30개 사업장 위탁 현황 점검 결과,
 - ○○병원, ▽▽▽공원, ◎◎·◆◆◆◆녹지사업소 등 7개 사업장²⁾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관리대행기관에 위탁관리하고 있음.(각 기관은 현재 채용 진행중이거나 내년 채용 예정)
 - ※ ◆◆◆◆사업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1.12.10.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위탁관리한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음.
 - ※ ▽▽▽▽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안전관리자 요원) 채용이 진행중이나 지원자가 없어 3차 재공고 준비중이며, 향후에도 중대처벌법 시행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안전관리자 채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1) 기업규제완화법 개정('20.10.20.)으로 '21.10.21.부터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없음.
 2) ◆◆◆◆녹지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공원, 서울◆◆◆◆(안전관리자만 해당), ○○병원, 은평병원

- 아울러, 서울□□□은 '21.9월 기준 314명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간 (3~11월 근무)에 따라 상시근로자 인원수가 달라지므로 300명 미만 또는 이상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따른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상태임.

조치할 사항

- ○○○○담당관, ◆◆◆◆녹지사업소장 등 6개 기관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채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통보)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개선 [통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³⁾을 가진 최종관리자이며,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이행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이 다수에게 분산되어서는 안됨.
- 그런데, 서울시 사업장 샘플 점검 결과,
 - ■■■■■공사는 기획경영본부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재지정 또는 실질적 권한 부여가 요구되며,
 - ○○○○공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각 본부장(★★★★실장,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으로 지정하여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이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권한 부여 또는 재지정 등 검토 필요

조치할 사항

- ■■■■■공사 사장, ○○○○공사 사장은 상기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통보)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는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적절하게 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출처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③ 안전·보건 전담조직 및 인력 총원 검토 필요 [권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인력이 총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⁴⁾을 두어야 하며,
 -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인력이 있는 지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 그런데, 서울시 사업장 샘플 점검 결과,
 - ▲▲▲▲본부는 '21.9월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인원 825명(공무원 241, 비공무원 584)이며, 현재 총무부 총무과 서무팀(비직제) 소속 행정6급 1명이 중대재해 업무를 총괄⁵⁾하고, 안전보건관리팀(비직제) 소속 3명이 중대재해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아울러, 11개 한강공원(센터), 나들목, 보행육교 등 255개소, 매점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 4,682개소, 축구장 등 운동시설 261면, 녹지대, 유선장 등 수상시설 57개소, 수중보, 한강제방, 자벌레 문화시설, 노들섬 옹벽 등 다양한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음
 - ▲▲▲▲본부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과 단위의 전담조직을 신설·계획('21.11.9.)하였으나, 인력 문제로 전담조직은 신설하지 못함
 - 점검결과, 고용노동부 질의 결과 전담조직 의무대상은 아니나, 체계적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부장 직속의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4) 전담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 조직으로 실질적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 유해·위험방지 정책 수립,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 등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의 이행을 총괄·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출처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5) 중대재해 총괄 담당직원은 그 밖에 시의회(국회), 직원복무, 감사, 공무원·기간제 채용, 노조, 일상경비출납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서울△△박물관은 중대재해 업무 사무분장이 되지 않은 채 행정6급 1명이 (의회, 성과관리, 청서관리, 뉴딜·기간제, 박물관 위원회, 일상경비출납원 업무) 중대재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중대재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인력 충원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며,
- ◆◆◆◆◆본부 8개 수도사업소에는 시설관리과 내 안전관리팀(비직제)를 신설, 2명(6급 1명, 7급 이하 1명)을 배치하여 재해예방에 대처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사장, 배수지·가압장 기계설비, 약품 등 위험물 관련 업무를 위해 토목, 전기, 기계 분야별 전문인력 1명 추가 충원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조치할 사항

- ▲▲▲▲본부장, ◆◆◆◆◆본부장, 서울△△박물관장은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 인력(조직)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권고)

④ 안전·보건 예산 확보 등 보완 필요 [통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에 따르면,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종사자의 의견 청취에 따른 비용, 점검결과 후 안전보건 의무 이행비용 등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그런데, 서울시 8개 사업장 샘플 점검 결과,
 - ▲▲▲▲본부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산을 구분하여 산출하였으나, 최우선과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집행계획은 미흡, 중대시민재해 관련 제방, 옹벽 등에 대한 예산 책정 검토 필요
 - 서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운용비, 위험성평가실시 비용 예산 편성 누락
 - 서울△△박물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운용비 예산 편성 누락됨.

- ■■■■■■공사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옹벽,교량)를 구분하여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집행계획 수립 필요, 안전 소요 예산항목(인건비, 안전점검비, 장비·시설보수비, 운영비 등)을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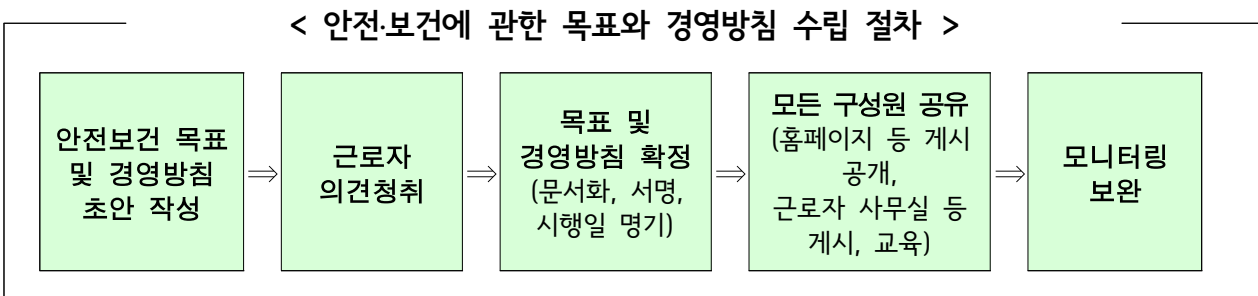
조치할 사항

- ▲▲▲▲본부장, 서울□□□장, 서울△△박물관장, ■■■■■■공사 사장은 편성이 누락된 비용과 위험성 평가를 반영하여 누락된 예산이 없는지 확인 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등 안전·보건 예산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통보)

나 목표·경영방침 미설정 및 구성원 의견청취·정보공개 부적정

①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미설정 [통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중대 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종사자 등 구성원이 공감·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장의 특성, 유해·위험요인, 규모 등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며,
 -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함.



- 그런데, 서울시 8개 사업장 샘플 점검 결과,
 - ▲▲▲▲본부 등 5개 사업장⁶⁾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진행중으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은 설정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 종합계획 수립 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사업장 구성원, 도급·위탁업체, 시민 등 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사내 게시판 등에 공개

조치할 사항

- ▲▲▲▲본부장, ◆◆◆◆본부장, 서울△△박물관장, 서울□□□장, ◆◆◆◆녹지사업소장, ■■■■■공사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② 안전·보건 정보 공개 및 구성원 의견 청취 방안 마련 미흡 [통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에 따르면,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 관련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신고·제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참여자는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 주요 공개 정보(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참여 절차 ▶ 위험요인별 제거·관리 방안 ▶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정보 ▶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	---

※ 출처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고용노동부, 서울시)

- 그런데, 서울시 사업장 샘플 점검 결과,
 - 서울□□□ 등 5개 사업장⁷⁾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가 미흡하였음.

6) ▲▲▲▲본부, ◆◆◆◆본부, 서울□□□, 서울△△박물관, ◆◆◆◆녹지사업소, ■■■■■공사(목표만)
 7) ▲▲▲▲본부, ◆◆◆◆본부, 서울□□□, 서울△△박물관, ◆◆◆◆녹지사업소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사업장 내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물질, 아차사고 발생 현황 등 그 밖에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
-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림

※ ▼▼▼▼담당관에서 행정포털 내 '중대재해' 게시판을 신설('21.12.1.)하였지만 활용실적 없음

- ■■■■■■공사는 사내 인트라넷에 재난안전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나, 활용실적은 거의 없어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도급업체, 하청업체, 파견업체 등의 신고 및 제안을 유도하고 그 조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하여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SH 발주 도급·위탁사업 재해 등으로 구분하여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공사는 공사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회사(청소, 엔지니어링 등) 직원들까지도 포함시켜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며, 신고·제안자가 원할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목표와 경영방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등 안전보건관리 전반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나, 자회사 구성원에게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재해예방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조치할 사항

- ▲▲▲▲본부장, ◆◆◆◆본부장, ◆◆◆◆녹지사업소장, 서울□□□장, 서울△△박물관장, ■■■■■■공사 사장, ○○○○공사 사장은 안전·보건 정보 공개 및 구성원 의견 청취 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통보)

③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의결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개선 필요 [통보]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예방 대책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
- 그런데, 서울시 사업장 샘플 점검 결과,
 - ▲▲▲▲본부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하였으나 본부장의 승인이 없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음.
 - 아울러, 제정자, 심의자도 명기하여 기록·유지관리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 등의 관련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종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함.
 - 서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측 위원은 공무원 5명(시설청소원 1명, 환경정비원 4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안전위험에 대해서는 현장 근로자가 잘 알고 있으므로, 다양한 인적 구성원의 대표들로 구성·개선⁸⁾될 필요가 있음.
 - ※ 서울□□□ 근로자는 공무원(44명), 공무원(73명), 기간제(110명), 뉴딜일자리연구원(18명), 공공근로(45명), 축탁직(1명), 기타 매점포원(18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치할 사항

- ▲▲▲▲본부장은 상기 지적된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통보)
- 서울□□□장은 다양한 인적 구성원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안전·보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시기 바람(권고)

8) 서울□□□은 공무원,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뉴딜일자리연구원, 공공안전관, 공공근로 등 다양한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 내 푸드코트, 카페, 기프트샵, 도서관, 아기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 전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신고·제안자가 원할 경우 익명성 보장 필요

다 위험성 평가 및 매뉴얼 마련 등 미흡

① 위험성 평가 과정 미흡 [통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에 따르면,
 - 기계·기구·설비, 증기, 분진 등 유해·위험 요인을 유형별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실시·개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이행하여야 함.
- 그런데, 서울시 사업장 샘플 점검 결과,
 - ▲▲▲▲본부는 근로자 참여없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과정에서 위험성 등급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
 - 따라서, 여러 유형의 작업의 근로자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한 사실을 기록하고, 사례분석, 종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한 위험성 등급결정(정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를 하고 보고서에 기록을 남겨야 할 것임.
 - 아울러, 위험성 평가는 근로자들이 알기 쉬운 곳에 게시·공유하고, 안전교육 시 교육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서울□□□은 '21.10월 위험성평가를 완료하였으나, 병해충 예방 농약사용 및 고소작업대, 미니굴삭기, 제설기계 등 기계류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누락되어있으며, 근로자는 미화1명, 녹지1명만 일부 참여하여, 유형별 해당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한 사실을 보고서에 기록·관리가 요구됨.
 - 서울△△박물관, ○○○○공사는 여러 유형의 작업 근로자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한 사실을 보고서에 기록하여 근거를 남기고, 평가결과를 근로자들이 알기 쉬운 곳에 게시·공유하고, 안전교육 시 교육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조치할 사항

- ▲▲▲▲본부장, 서울□□□장, 서울△△박물관장, ○○○○공사 사장은 상기 지적된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통보)

② 비상조치계획·매뉴얼 미수립 및 재정비 지연 [통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에 따르면,
 - 안전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상조치계획⁹⁾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조치계획을 개선하여야 함.
- 그런데, 서울시 8개 사업장 샘플 점검 결과,
 - 점검대상 기관 전체적으로 매뉴얼 재정비가 진행 중에 있거나 위험성 평가를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며
 - 중대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 수립 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며,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조치계획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9) 비상조치계획에는 상황보고·전파, 임시적인 위험요인 제거방안, 근로자 대피방안, 추가 피해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 서울□□□은 “서울□□□ 내 금지행위 단속·계도 업무 매뉴얼”(21.11.10.)
외에는 별도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재해 대비 매뉴얼을 마련 중에
있음.

- 서울□□□에서는 “□□□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약살포
유의사항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으나, ①작업 전 안전교육 간헐적 실시 및
직업일지 미기록, ②작업지시서 미작성(구두 지시), ③농약보관함 농약관리
책임자 미부착, ④야외 제초제 농약보관함 미잠금 등 안전예방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농약살포 작업 및 미니굴착기 등 기계차량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전반의 위험성 평가(작업자 의견 수렴)가 반영된 체계적인 작업절차표(매뉴얼)를
마련하고 서울□□□ 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시에 통합관리가 요구됨.
- 아울러, 비상조치계획 수립 시, 농약 및 굴착기 등 기계차량에 대한 위험
요인을 바탕으로 한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이 요구됨.

[표 1] 서울□□□ 농약창고 등 안전점검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제 관리대장(농약) 인출시간 표기 필요 • 작업지시서에 따른 농약인출, 작업 전 교육일지 작성, 전자 결재보고 등 안전조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창고 농약관리책임자 부착 필요, • 농약위험물 안전표지 부착 필요 	<p>야외에 잔디제초제 농약함이 설치되어 있어 시민 누구라도 농약을 인출(범죄 우려)할 수 있으므로 잠금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 필요</p>	
<p>미니 굴착기</p>	<p>고소 작업차</p>	<p>트랙터(제설로우더)</p>	<p>작업차</p>

- 서울△△박물관 매뉴얼에는 안전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내용이 미흡함.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담당자는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상황을 보고하며 재해자에 대하여 긴급구호조치, 긴급 안전 조치 등을 시행하고 중대시민재해 발생 상황을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매뉴얼 시나리오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 ※ 예를 들어 화재발생시를 보면 소화의 개념에서만 접근하였고 재해자에 대한 조치 내용 등은 없는 상태임
 -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관리 담당자의 대응상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필요시 추가 피해방지조치를 지시하며 상황 종료후 피해 원인조사 및 재건대책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나, 매뉴얼 시나리오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없으며,
 - ※ 예를 들어 경영책임자의 대응 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음
 - 안전관리담당자등은 경영책임자등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경영 책임자, 관계행정기관 등에 보고하여야 하나, 매뉴얼 시나리오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 매뉴얼 보완 조치가 필요함.
 - ※ 예를 들어 경영책임자 지시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의 이행과 보고에 대한 내용은 없음

조치할 사항

- 서울□□□장, △△△△박물관장은 상기 지적된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통보)

라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조치 및 소방 안전예방 조치 개선 필요

①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조치 미흡 (통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에 따르면,
 - 기계·기구·설비, 증기, 분진 등 유해·위험 요인을 유형별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평가를 실시·개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그런데, ◆◆◆◆녹지사업소 현장 점검 결과,
 - 공원 내 수목 및 녹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자들이 엔진톱, 예초기 등 위험기구를 수시로 사용하고 있고, 창고에는 공사장 안전모, 안면보호, 귀마개, 일반장갑 등 있으나, 작업유형별로 전용보호장구는 없음.
 - 특히, 엔진톱은 고속의 체인이 회전하는 위험기구로 숙련된 기술자(산림기능사 등)가 아니면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력이 작업을 해야함
 - 위험기구 사용 前 안전보호구 착용이 필수적임을 교육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고 있어 재해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임.
 - ※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송풍기 사용 작업 시 전용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음.
 - 예초기의 경우 작업효율은 높으나 사고위험이 높은 일자날이 있었고, 전용 안전모가 아닌 공사용 안전모, 일반캡보자, 등산모자, 밀짚모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엔진톱, 예초기, 전정기, 낙엽송풍기, 천공기 등 사용 시 엔진소음으로부터 작업자 청력보호를 위한 전용보호장구는 없음.
 - 따라서 접이식 안전날 또는 나일론 날, 안전모, 안전보호복, 청력보호를 위한 귀마개, 다리보호대, 안전화 등 인증된 전용보호장구를 구비하여 작업자 재해 예방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표 2] ◆◆◆◆◆ 녹지사업소 안전장비 점검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초기 일자날 → 예초기 전용 안전날 교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용품 보관창고 ● 유형별 안전장구물품 구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장갑이 아닌 일반장갑 구매 필요

[표 3] 엔진톱, 제초기 등 사용 시 필요한 기본 안전보호장구(예시)

<p>전용안전모 (안면보호, 수습방지, 경음)</p>	<p>안전보호복</p>	<p>안전장갑</p>	<p>안전화</p>	<p>다리보호대</p>

조치할 사항

- ◆◆◆◆◆ 사업소장은 근로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작업 유형별 전용 보호장구 구비, 안전용품 지급대장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통보)

② 소방분야 안전예방 조치 및 개선 필요 (통보)

- 「소방시설법」 및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 「소방시설법」 및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된 소방시설(피난구유도등, 화재감지기, 피난대피시설,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등)이 화재, 재난·재해예방에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도록 설치·유지 관리해야함
- 그런데, 서울△△박물관 및 서울□□□ 현장 점검 결과,
 - △△△△박물관은 화재 열기의 감응을 위하여 각 층에 스프링클러 헤드 집열판을 설치하였으나, 사무동 5층에는 다른 층보다 크기가 작은 집열판(약 직경 10cm)이 설치되어 있어, 화재 열기의 신속한 감응을 위해 보다 큰 집열판 설치 검토 필요하며,

- 사무동 1층 화장실에는 화재감지기가 보이지 않아, 설치유무 점검 필요
- 사무동 3층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 사다리의 설치 상태는 양호하나, 개방 사용시 자바라 형식으로 흔들리며 해당 층고가 높아 피난 중에 낙상사고 우려가 있어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 등 개선 검토 필요

[표 4] △△△△박물관 소방시설 점검 현황

<p>사무동 5층 사무실 복도 스프링클러 집열판</p>	<p>(표본) 스프링클러 집열판</p>	<p>1층 화장실 상부 화재감지기 설치 유무 확인필요</p>
<p>박물관 3층 하향식 피난구</p>	<p>하향식 피난사다리 (버튼 자바라 형식)</p>	<p>무동력 승강식 피난기(샘플)</p>

- 서울□□□은은 온실 내부 피난경로로 통하는 출입구의 피난구유도등이 미점등 상태이고, 온실동 1층에는 측벽형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리플렉터 각도 조정 필요한 상태임, 아울러, 3층 강의실 스크린은 방염 성능이 있는지 확인 조치 필요

[표 5] 서울□□□ 소방시설 점검 현황

<p>온실□□□ 내부 피난구유도등 미점등</p>	<p>(온실동)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리플렉터 재조정 필요</p>	<p>3층 강의실 스크린 방염물품인지 확인 필요</p>

조치할 사항

- 서울□□□장, 서울△△박물관장은 상기 지적·개선할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통보)

5.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감사

1. 감사근거 및 배경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적용범위) 및 제3조(감사의 종류)
-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6627호 (2021.10.7.)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자체감사 요청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민생사법경찰단, 비상기획관, 도시교통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 감사기간 : 2021.11. 5.(금) ~ 11.15.(월)(기간 중 7일)
- 감사인원 : 감사 1팀장 등 7명(감사2팀, 감사3팀, 공공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 감사범위 : 2021.1월~2021.10월분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3. 감사중점

-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명령 후 실제 초과근무 여부
- 출장여비
 - 출장 시 관용차량 이용 및 4시간 미만일 경우 1만 원 지급해야 하나 2만 원 지급
 - 4시간 미만 출장에 대해 4시간 이상 출장으로 지급
 - 출장 결과 보고서 미작성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4	5	9,240	0 (0)	0 (0)	3 (9,240)	3 (9,240)	0 (0)	0 (0)	1 (5)	0 (0)	0 (0)	0 (0)	0 (0)	0 (0)

□ 총 평

- 행정안전부로부터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자체 감사 요청에 따라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21년도 초과근무 및 출장여비 지급 상위 3개부서를 지정하여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복무 감사를 실시한 결과,
 - 초과근무수당 감사대상기관인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비상기획관에 대해 퇴근 후 불시 점검, 등 점검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음.
 - 출장여비 부정수급 감사대상기관인 민생사법경찰단,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교통실에 대해 전자결재 접속기록, 복무관리시스템(출장관리) 출장신청등록자료, 출장결과보고서, 차량배차 일지, 소명서 징구자료 등을 점검하여 총26명 308만원의 부정수령사항을 적출하였음.
- ⇒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 감사결과 조치

□ 출장여비

연번	감사대상기관	지적내용	처 분 요 구			비고
			처분종류	재정상 조치		
				종류	금액(천원)	
1	민생사법경찰단	출장여비 지급절차 관리 소홀	시정요구	환수 및 2배가산징수	7,770	환수 완료
2	상수도사업본부	출장여비 지급절차 관리 소홀	시정요구	환수 및 2배가산징수	780	환수 완료
3	도시교통실	출장여비 지급절차 관리 소홀	시정요구	환수 및 2배가산징수	690	환수 완료

6. 플랫폼창동61 운영실태 조사

1. 조사배경 및 목적

- ‘플랫폼창동61’ 사업과 관련, 운영업체 등에 대한 시민 부정 여론 및 공사비, 운영비 등 부정 지출 의혹에 대한 특별 점검·조사를 통해 민간 위탁 사업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조사내용

- 대상기관 : 市 동북권사업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 조사기간 : '21. 8. 25. ~ 12. 24.(조사2팀장 외 1명)
- 조사범위 : ‘플랫폼창동61’ 사업추진 배경 및 운영 전반

3. 조사중점

- 사업비 과다 투입 배경, 대행사업 사전절차 이행 여부, 위탁 운영사업자 선정 과정, 위탁업체의 운영 적절성, 방만한 예산 운영 등 사업비 누수 의혹 등 사업 운영 전반 적정 여부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환수)	감액	기타					
6	2 (2)							2 (2)	1		3		

※ 주의요구 인원 2명(주의 2)

□ 조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1. 처분요구 사항

연번	관련기관 /부서	처분 유형	처분요구 제목	지적내용 및 조치할 사항	조치현황
1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통보	○ 사업비 예산 미편성 및 의회 동의없이 사업진행 불공정한 사업대행계약서 (협약서) 체결	-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체결한 ‘플랫폼창동61’ 사업대행계약서에 따라 ‘공사’에 대해 사업비 및 운영비 채무 170억 원 상당(수수료 4%)에 대해 검토, 해결방안 마련 필요	추진중
2	서울주택도시 공사	개선 요구	○ 사업비 예산 미편성 및 의회 미심의, 계약심의위원회 절차 미시행	- 서울시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원가심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검토 - 지방계약법령 취지에 따른 관련 시행내규 개선	“
3		통보		- 위탁업체 선정 등 각종 사업평가 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투명성·객관성이 확보되도록 분야별 외부 심사위원 구성 등 관계 규정 개정	“
4		통보		- 자체 감사를 통해 협약이행여부, 예산집행 등 운영 실태 주기적 지도·점검 실시	“
5		주의 요구		- 사업추진시 관련 법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주의 촉구 (관련자 신분상 조치)	“
6		(전)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현)○○○구 ▲▲과	주의 요구	○ 사업비 집행 및 사업 대행계약서 체결 市예산부서와 미협의, 총괄예술감독 대가 고정급으로 지급 부적정	- 정책 사업 추진시 관련 법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주의 촉구 (관련자 신분상 조치)

7.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 특정감사

1. 감사배경 및 목적

- 이번 감사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업체의 전문성 논란, 부실운영 등 문제 제기에 따라 조성·운영실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고자 함.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문화본부(수탁기관 포함), 균형발전본부,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주택정책실,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 감사기간 : 2021. 8. 30.(월) ~ 10. 8.(금)(기간 중 26일)
 ※ 예비감사: 2021. 8. 23.(월)~8. 27.(금)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등 7명
- 감사범위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전후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 적정 여부
- 그 간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실태 적정 여부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 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6	2	56,760	0 (0)	0 (0)	1 (56,760)	1 (56,760)	0 (0)	0 (0)	3 (2)	0 0	0 0	1	1 (1)	0 (0)

※ 고발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은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변경('22.1.19. 재심의 결과 반영)

□ 총 평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 운영 경험이 적은 대표사가 상업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업체에서 민간위탁금의 횡령·배임 혐의가 적발되는 등 총6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되었으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민간위탁금의 횡령·배임 혐의’ 관련

- 운영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 4월경 공연장비 임차사실이 없는데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20년 12월경 계약금 22,000천원을 지출하는 등 약 56,760천원을 횡령·배임한 혐의사실을 적발하고 2021년 10월 13일 운영업체 고발

- ‘건설업 미등록자와 공사계약 체결’ 관련

- 운영업체는 2019년 8월 15,000천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인 가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15,000천원 이상 총 4건의 공사계약(계약금 128,922천원)을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체결함으로써 지방계약법 위반

⇒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 주관부서에는 기관경고 및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조치 완료)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관련기관	처분요구제목	처분유형	조치할 사항	조치현황
문화본부	허위계약에 따른 민간위탁금 횡령·배임 혐의 정산 관리 소홀	시정요구	① A·B 컨소시엄에 대하여 서울시가 2021. 6. 7. 체결한 「노들섬 특화공간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21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 위 민간위탁금 56,760천원을 반납받는 방안 강구 ② 앞으로 수탁기관에서 민간위탁금을 반납하지 않고 횡령·배임하거나,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 ※ 주관부서에 기관경고 조치	조치 중
문화본부, 균형발전본부	컨소시엄 구성원 탈퇴에 따른 변경협약서 미체결 부적정	주의요구	향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사업관리에 철저 ※ 관련자에 신분상 조치	조치완료
문화본부, 균형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제안서 평가 미실시 등	주의요구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진행 시 관련 업무 철저 및 공사, 용역 등의 준공 시 일반 관리비율과 이윤율이 변경되어 준공 금액을 과다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철저 ※ 관련자에 신분상 조치	조치완료
문화본부, A 컨소시엄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요구 통보	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수탁기관들에 대한 지도 및 점검 활동 철저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를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천5백만 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한 가사무소(대표자 ■■■■)등 4개 관련 업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라 고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조치완료

8. 2021년 건설공사 하도급분야 감사

1. 감사배경 및 목적

- 건설 공사장내 하도급분야 감사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해 업체간 상생협력 및 부조리를 차단하여 건설공사 안전사고예방

2. 추진내용

- 대상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8개 기관
- 감사기간: 2021. 5.31.~ 6.30.(기간 중 23일)
- 감사인원: 하도급감사팀장 등 5명
- 감사범위: 2019.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한 건설공사 하도급전반

3. 감사중점

- 체불관련 선급금, 기성금, 노무비 장비대금 등 공사대금 지연지급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공사계약 일반·특수 조건 준수여부 등
- 건설공사 시공적정성 등 전반사항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징 (화수)	감액	기타						
18	0	0	0	0	0	0	0	9		0	8	0	1 (1)	

총 평

- 시, 투자기관 등 8개 기관이 2019. 1. 1.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36개 건설공사현장의 계약 및 정산분야, 하도급관리분야, 건설공사안전 및 시공분야에 대해 감사한 결과
 -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노력을 통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노무비 직접지급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기존 상명하복의 일방적인 소통방식에서 벗어나 관리자가 직접 공사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각종 불법행위(하도급불공정, 근로자 불안 및 부실공사 등)를 예방하는 모범적인 현장도 있었으나,
 - 일부기관에서는 아직까지도 동일 업종 하도급, 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하도급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안전인증이 확인되지 않은 가설 기자재를 반입하여 시공하는 등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

- 조치사항
 - 지적사항 18건 중 조치완료 14건, 조치 중 4건이며, 불법하도급, 노임 허위청구, 미인증 자재사용으로 발주청과의 계약위반 및 손해를 끼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공사관계자 지도·교육실시 통보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관계기관	처분요구 제목	처분종류	조치현황	비고
1	서울교통공사 (가사업소)	미인증 가설기자재 공사현장 반입 사용	통보	-적정 성능자재로 교체 완료 -고용노동부에 납품업자, 계약 상대자 고발 완료	조치완료
2	서울주택공사	공사용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미이행 관련	주의요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완료 -공시관계자 지도교육 실시 완료	조치완료
3	서울주택공사 (나사업부)	조경수 품질관리 및 식재 후 생육상태 관리불량	주의요구	-전문기관을 통한 원인규명 및 사후대책 수립 완료하였으나, -사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중	이행중
4	서울주택공사	하도급 부당특약 관리 감독 부적정	통보	-부당특약 내용 삭제 완료 -위반사항 관할 행정기관 통보 완료 -공시관계자 지도교육 실시 완료	조치완료
5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주택공사, 서울교통공사, 재무국(기과), 안전총괄실(나과)	하도급 계약현황 공개 부적정	주의요구	-공개실시	조치완료
			통보	-발주기관 관리감독 철저 및 공개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이행중
6	도시개발시설 본부(기부) 상수도사업본부 서초구청 (나과)	건설근로자 임금 구분지급 의무 위반	주의요구	-공시관계자 지도교육 실시 완료	조치완료
7	도시개발시설 본부(기부) 서초구청(다과)	건설기계대여대금 구분지급 의무 위반	통보	-공시관계자 지도교육 실시 완료	조치완료
8	상수도사업본부	전자인력관리시스템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주의요구	-공시관계자 지도교육 실시 완료	조치완료
9	서울시설공단 (기체)	현장별보증서 지연발행 등 계약관리 부적정	주의요구	-공시관계자 지도교육 실시 완료	조치완료
10	안전총괄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 관리방법 개선	통보	-관리방법 개선 검토 중	이행중
11	도시개발시설 본부(기부)	하도급을 미달한 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미심사	주의요구	-공사관리관 교육 실시 완료	조치완료
12	한강사업본부 (다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하는 보증서 미발급	통보	-관할관청 처분 요청 통보 완료	조치완료
			주의요구	-공시관계자 지도교육 실시 완료	조치완료
13	한강사업본부 (리과)	임시가로등 기초노출 시공불량	주의요구	-공시관계자 지도교육 실시 완료 -현장 조치완료(기초매립)	조치완료
14	양천구청	오수관로 공사의 작업구내 불명수 유입 및 침하 발생	통보	-불명수 원인분석 및 침하 부위 보강 실시	조치완료
15	서울시설공단	공사관계자 청렴 소통의 날 운영을 통한 현장소통 강화	통보 (모범)	-시장포창 추천	조치완료
16	서울교통공사	불법하도급 및 노무비 허위청구 등	통보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과 등 조치 예정	이행중

9.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특정감사

1. 감사배경 및 목적

- 언론, 시의회 등을 통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사업 구조상 한계, 안전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지원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고자 함.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평생교육국(가과),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 공공급식센터(10개소)
- 감사기간 : 2021. 10. 12.(화) ~ 11. 11.(목)(기간 중 23일)
- 감사인원 : 감사3팀장 등 9명(공익감사단 3명 포함)
- 감사범위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도농상생 목적의 실현 여부
- 사업비, 보조금 등 사용의 적정성
- 농·축·수산 공급 식자재의 안전성 관리체계의 적정성
-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적정성 등

4. 지적사항 총괄¹⁾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문책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환수)	감액	기타					
25	0	0	0 (0)	0 (0)	3 (0)	0 (0)	0 (0)	3 (0)	9 (0)	0	0	13	0 (0)

1) 현지 조치사항 총 6건 제외(시정 1건, 주의 5건)

□ 총 평

- 이번 감사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시행 5년차를 맞아 사업의 운영 및 관리실태와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시 주관부서 및 자치구 관련부서,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10개소를 대상으로 2021.10.12.부터 11.11.까지 실시하였음.
- 감사결과 사업 구조의 한계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저하, 자치구별 선택권 제한 및 가격편차 문제, 안전성 관리체계 미흡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총 25건 확인되었음.
- 유통·공급 구조의 적정성 분야에서는,
 - 산지센터 미공급 식재료에 대해 수탁기관의 식재료를 구입하게 하여 사실상 수탁기관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였고
 - 자치구 승인이 필요한 공공급식센터 식재료의 품목·가격에 대한 심의, 조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 일부 공공급식센터에서는 적절한 계약 절차 없이 별도의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었음.
- 도농상생 구현 여부를 확인한 결과,
 -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를 1대 1로 매칭한 직거래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품목의 한계 등으로 산지 공급비율 저하, 만족도 저하를 초래하였고
 - 중간유통단계의 개입으로 농가 수취율이 낮아졌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었음.

- 특히 1대 1 매칭 방식은 독점 구조를 야기하여 동일한 품목이라도 산지 상황에 따라 최대 60% 이상의 가격 편차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사업 운영·관리의 적정성 분야에서는,

- 자치구에서 민간위탁으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의회 미동의, 적격자 심의회 구성 부적정 등의 소홀함이 발견되는 등 전반적인 지도·감독의 소홀함이 드러났고,
- 잔류농약 검사 품목 선정 시 센터 자체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있어 객관성이 떨어지며, 수발주 시 안전성 검사 성적서 사전 등록이 의무임에도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안전성 관리에도 개선이 필요했으며,
- 또한 물류(배송) 직원이 검수·검품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있어 복무 시간 조정 등의 개선과 직원 채용 시 식자재 안전 자격기준 강화 등 전문역량 강화 등이 필요함.

※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하여 보조금의 지급 중단 또는 환수 등에 이르는 ‘보조금의 부정청구’ 사항 등을 추가로 점검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음.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사업 초기 설계된 구조상 한계에 따른 것으로 주관 부서에서는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업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공공급식센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통합 운영, 학교급식 시설과의 통합 운영 등 중장기적 관점의 효율화 방안 마련이 요청됨.

특히 사업 초기 생산자와의 직거래방식 등 노하우 활용과 도농 상생의 취지로 인해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일부단체를 지나치게 우대하고, 산지 지자체 등 협력기관에 대해 상호 점검을 통한 ‘책임성’ 확보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식재료 안전관리에 있어서 관계 소통, 신뢰성 구축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생산지 점검의 기본방향도 ‘신뢰·소통’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향후 공공급식센터 등 운영에 있어 다양한 업체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고 지자체 간 충실한 역할 이행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시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 주관부서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함.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연번	감사분야	관련부서	지적내용	처분요구				비고
				처분 종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종류	금액(천원)	
01	유통·공급 구조의 적정성	가 과	수탁기관 식재료 공급구조 불공정 등	통 보	-	-	-	부의
02		가 과	수탁기관 공급 식재료 품목·가격 결정 부적정	통 보	-	-	-	위임
03		나 과 ●공공급식센터	위수탁 협약사항 미이행 및 지도 감독 소홀	주의요구 (2)	-	-	-	위임
04		다 과 ◆공공급식센터 마 과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공급 관련 협약사항 이행 소홀 등	주의요구 (4)	-	-	-	위임
05	도 농 상 생 구 현 여 부	가 과	과도한 가격편차 및 수요자에게 불리한 사업구조 개선	통 보 (2)	-	-	-	부의
06		가 과	산지 지자체 매칭으로 인한 사업 비효율	통 보	-	-	-	위임
07		가 과	산지 중간 유통단계 최소화 및 투명성 확보 미흡	통 보	-	-	-	위임
08	사업 운영· 관리의 적정성	가 과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 체계 개선 필요	통 보	-	-	-	위임
09		가 과	물류(배송) 담당자 근무 시간 조정 및 역량 개선 필요	통 보	-	-	-	위임
10		바 다 마 가 과 과 과 과	민간위탁사업 추진 관련 적정성 검토 및 구의회 동의절차 미이행	시정요구 (3) 주의요구 (1)	-	-	-	위임
11		마 가 과 과	민간위탁사업 추진 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미개최	통 보 (2)	-	-	-	위임
12		가 과	공공급식센터 결품 및 클레임 처리 기준 미흡	통 보	-	-	-	위임
13	가 바 과 과	자산관리 업무 소홀	주의요구(2) 통보(2)	-	-	-	위임	

2.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내역 : 없음

3. 현지 조치사항 일람표

연번	지적분야	건 명	조치내용	처분종류	금 액
01	안전성 관리 분야 (★공급센터)	<input type="checkbox"/>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확인 업무 소홀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축산물은 2등급이상을 사용해야 하나 - 2021. 5. 20.자로 입고된 돼지고기 등급판정 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등외품'으로 기재됨 - 이에 관련자 면담 등을 실시한 결과 등급판정 확인서 대조과정의 오류로 확인되었으나, 물품 입고 시 검수, 검품 업무 소홀의 잘못이 있음	- 검수, 검품 시 관련 서류 확인 적임 철저히 - 향후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 실시	주 의	-
02	안전성 관리 분야 (♥공급센터, 사과)	<input type="checkbox"/> 배송차량 식재료 온도 기준 미준수 등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채소류의 경우 배송차량은 10℃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나, - 차량 운행일지와 타코메타 등을 확인한 결과 2021년 7월~9월 중 24회 기준 온도가 초과된 채 운행 - 또한, ♥♥구 사과에서는 '21년 8월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적절한 지적을 하지 않음	- 배송업무 차량관리 철저 및 관련 직원 교육 실시 - 센터의 안전한 식재료 배송을 위해 지도·점검 철저	주 의	-
03	안전성 관리 분야 (아 과)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식재료 제재조치 내역 관리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나주 공공급식센터는 식재료 부적합 판정 시 기초지자체 제재조치 시행 후 그 결과를 △△구에 통보하여야 하나, - △△구 공공급식센터와 나주 공공급식센터는 제재조치 관련 공문 등의 자료를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제재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하지 못함	- 부적합 식재료 제재조치 관리 철저	주 의	-
04	예산·회계 분야 (□공급센터)	<input type="checkbox"/> 재정보증보험 가입 업무 부적정 ○ 「지방회계법」 등에 따라 회계 업무 관련 직원은 재정보증 가입 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 회계관계 직원인 센터장 등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 연도 내 퇴사자의 가입 기간이 연말까지 산정되어 보험료가 지급되는 등 관련 업무 부적정	- 미가입된 회계관계 직원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 중도 퇴사자의 보험금 환급	시 정	-

연번	지적분야	건 명	조치내용	처분종류	금 액
05	유통·공급 분 (바 과, ■공공급식센터)	<p>□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 부적정</p> <p>○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지침」과 위·수탁 협약에 따라 식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공급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협의하여야 함에도</p> <p>- 특정업체와 식재료 공급계약(20.5.~23.4.)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위수탁 협약 및 지침이행을 소홀히 함</p>	<p>- 향후 도농상생 급식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공급식센터(수탁기관)에 사는 지침과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을 철저히</p> <p>-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히</p>	주 의	-
06	운영분야 (□공공급식센터 ■공공급식센터)	<p>□ 공공급식센터 식생활교육 수행 부적정</p> <p>○ 공공급식센터 위·수탁협약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p> <p>- □□4구 공공급식센터에서는 식생활교육업무를 수탁기관 관련 강사위주로 교육을 진행하였고, 협약을 체결하여 수탁기관에서 시행하는 강사양성과정(유료) 수료자로 강사자격요건을 부당하게 제한하였고</p> <p>- ■■9구 공공급식센터에서는 수탁기관 관련 단체에게 5년간 교육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였으며 아무런 원인행위 없이 식생활교육비를 전체 지급하거나, 협약이나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 일정한 기준없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함.</p>	<p>- 향후 도농상생 급식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공급식센터(수탁기관)에서는 지침과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을 철저히 하고,</p> <p>-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p>	주 의	-

10. 서울혁신센터 운영실태 특정감사

1. 감사배경 및 목적

-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지원과 시설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된 서울혁신센터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추진
-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원인 등을 규명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서울혁신센터 및 시민협력국(가과)
- 감사기간 : '21. 10. 8.(금) ~ 11. 8.(월) ※ 기간 중 21일
※ 실지감사 : 10. 20.(수)~11. 8.(월)
- 감사인원 : 감사2팀장 등 7명
- 감사범위 : 서울혁신센터 운영실태 전반

3. 감사중점

- 서울혁신파크 조성 및 서울혁신센터 설치·운영
- 서울혁신센터 운영실태 전반
 - 직원채용, 복무관리, 승진·승급 등 인사·복무 분야
 -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예산·회계 분야
 - 시설 운영, 공사·사업·용역시행 및 물품관리 분야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원)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현지 조치
총건수 ¹⁾	신분상 조치인원 ²⁾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환수)	감액	기타						
26	1	20	-	-	4	1 (20)	-	3	17 (1)	-	-	5	-	1

1) 市 소관부서 10건(주의요구6, 통보4), 혁신센터 16건(시정4, 주의요구11, 통보1) ※ 현지조치 1건 미포함

2) 신분상 조치 : 혁신센터 1명(기관장 경고 1)

□ 서울혁신파크 조성 및 서울혁신센터 설치 경과

1. 서울혁신파크 조성 경과

당초('08년 ~ '11년)	변경('12년, 前 ■■■시장)
세대공감형 웰빙 경제문화타운 • 서북권 업무상업중심지(웰빙 경제문화타운) • 가족형 체험·문화공간의 메카 조성	서울혁신파크 조성 •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의 중추기지 • 다양한 혁신주체 간 협업·교류의 장

- 2008. 9월 2,023억 원 예산을 들여 舊 질병관리본부 부지를 매입한 후 2010. 2월 해당부지에 ‘세대공감형 웰빙 경제문화타운’을 조성하는 ‘서북권 지역전략거점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함
- 이에 따라 실무 TF회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1. 9월에는 ‘세대공감형 웰빙 경제문화타운’ 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당시 진행 중인 용역¹⁾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함
 - 사업비 6,600억 원을 투입하여 45층 중심기능시설(업무·판매·호텔 등), 어르신행복타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장기전세주택, 도서관 등 조성
- 그러나 2011. 10월말 취임한 전임시장의 취임 2개월째 부지 현장방문, 2012. 1월 서울혁신기획관 신설과 6월 혁신파크 조성계획에 대한 행정 1·2부시장 연석회의 등 일련의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함
- 결국 2012. 6월말 부지 전체를 사회혁신파크로 지정함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세대공감형 웰빙 경제문화타운’ 조성 계획은 전임시장 취임 이후 8개월 만에 부지활용 방향이 전면 변경됨
 - 2012. 8월부터 혁신파크 조성계획이 마련되기 전 중간지원조직(5개)* 先 입주
 - * 마을공동체·인생이모작·청년일자리허브·사회적경제·크리에이티브랩 등 관련 조직
 - 2012.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용역 시행

1) 상암·수색 부도심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용역(2011.5월~2013.2월)

- 전임시장 취임 후 9.5개월이나 연장되어 준공, ‘웰빙 경제문화타운 조성’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종전 계획과 다른 공간활용 방향성 제시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전면철거 개발을 지양 등

○ 2013. 5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9월부터 8개월간 공간조성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 2014. 5월 혁신파크 설치·운영 조례의 제정·공포에 이룸

- (기본계획) 혁신단체 등 집적·육성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및 혁신허브 조성
- (조례제정)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 발의안을 수용, 1개월여 만에 제정·공포

○ 2014. 7월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혁신의 중추기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서울혁신파크 조성 계획(안)’을 수립함

- 혁신기업·단체·연구기관 등 다양한 혁신 주체들의 협업·교류의 場 마련

√ 혁신파크정보관, 혁신업무공간(혁신발전소, 도서관, 연구센터 등), 혁신네트워크허브, 이노스토리텔(중형 비즈니스호텔), 혁신아케이드, 도시농업체험장 등 조성

○ 그러나 2014. 10월 혁신파크 조성 현안보고와 2015. 4월 혁신파크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해 이노스토리텔(중형 비즈니스호텔)은 포함되지 않고, 혁신관련 공간 위주로 조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됨

- (시장요청)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하여 신속히 활동단체 중심 조성 추진
- (추진방향) '15. 5월부터 활동단체 입주예정으로 혁신적 활동 지원계획 수립

○ 2015. 5월부터 1단계 조성공사 시행 및 기업·단체 등 입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① 지향목표가 다른 기관·단체가 혼재되어 혁신파크 정체성 퇴색, ② 입주단체 선정에서도 추상적 기준 적용으로 성과·실적에 대한 검증과 평가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서울혁신파크는 '14년부터 노후건물 리모델링 등에 435억원 투입하여 조성 8년차에 접어드나, 당초 목표한 ‘혁신의 중추기지’의 위상은 퇴색하고 ‘공유재산 사무실 임대’ 수준으로 활용되는 실정임

○ 現 시점에서 미래지향적이고 경제성을 고려한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이나, 현재 ‘혁신파크 부지활용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 중임(~'22년말)

2. 서울혁신센터 설치·운영 경과

【서울혁신센터 설치】

- 2014. 5월 혁신파크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혁신파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2015. 4월 혁신센터는 개소하여 현재까지 총 3차례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중임

구 분	수탁기관명	협약기간
1차	A	2015.04.13.~2018.03.31.
2차	B·C	2018.04.01.~2020.12.31.
3차	D·E	2021.01.01.~2023.12.31.

- 2014.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진행된 민간위탁(1차) 기관 공모에서 ‘A’가 단독으로 참가하여 선정되는데,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및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함
 - 수탁기관 선정 1년여 前, 전임시장 밀접한 인사들이 이사로 참여, 법인설립
 - 수탁기관 선정 직전(’14.11월), 혁신파크 운영방안 용역을 단독 수주, 수행
 - 이례적으로 서울혁신기획관이 적격자 심의위원 참여, 위원들 중 최고점 부여
 - ※ 수탁법인 선정 당시 ‘A’ 이사 중 1명은 서울혁신기획관이 2004년 설립한 단체 대표
- 최초 수탁기관인 ‘A’는 위탁기간 중인 2017년 하반기 이사들의 퇴임 등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市에 협약해지를 시도함
 - 市의 중도해지 불가 통보로 ‘A’는 위탁기간(’15.4.13.~’18.3.31.)을 이행하나, 위탁기간 만료 1년 후에 법인 해산(’19.4.8.)
- 이후 2021년 현재까지 2차례 더 민간위탁 기관을 새로 선정하였으나, 연차별 사업기능이 축소되어 시설관리 역량을 중점으로 모집·선정해야 함에도 시설관리 경험·역량부족 기관이 선정됨
 - (2차) 사회적기업 컨설팅 및 발굴·육성 등(사회적기업 관련 실적 대다수)
 - (3차) 기초지자체 위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등(공동도급 다수)

【서울혁신센터 운영】

- 2018년 대비 2021년 사업비는 70% 감소한 반면 인력은 77명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인건비는 25% 증가하는 불합리한 구조

- 인력변동 : ('18년) 76명 → ('19년) 76명 → ('20년) 77명 → ('21년) 77명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합 계	29,121	7,322	7,318	7,548	6,933
인 건 비	14,446	3,137	3,597	3,818	3,894
운 영 비	7,955	1,860	1,839	1,881	2,375
사 업 비	6,720	2,325	1,882	1,849	664

- 혁신파크 입주단체 50%가량의 선정·관리를 중간지원조직 등에서 직접 수행하고, 재산관리책임도 연차적으로 8개 중간지원조직 관리부서로 분산되어 혁신센터의 역할은 점진적 축소

- 입주단체 213개 중 99개를 중간지원조직 등에서 자체적으로 선정·관리

구 분	계	혁신센터	중간지원조직 등 자체 입주단체 선정·관리				기타
			㉠	㉡	㉢	㉣	
단체수	213	102	32	7	58	2	12

- 분임재산관리책임(분임재산 유지보존 및 관리·운영)을 ㉠단, ㉡과, ㉢담당관, ㉣과 외 4개 부서로 분산

- 2020. 5월 ㉢담당관에서 시행한 12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총점기준 10위(시민만족도 5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 평가 저조

-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지속적인 지적 발생, 교육 등 업무역량 강화 필요

- (개선과제)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지속 점검과 개선 노력

▶ 종합성과평가 결과 : 총점 79.24점(10위), 시민만족도 12.81점(5위)

- 現 민간위탁 기관의 수탁기간('21.1월~'23.12월) 중 필수적인 혁신파크 시설관리 위주의 효율적 운영이 바람직해 보임

□ 감사결과

〈 총 평 〉

- 이번 감사는 서울혁신파크의 입주단체 지원 및 시설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서울혁신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21. 10. 8.부터 11. 8.까지 실시하였음
- 감사결과, 연수동 운영 용역계약 및 관리감독 업무 소홀, 직원채용 관련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구성과 채용 합격자 기준 변경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 실태에 소홀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 등 총 18건 (감사대상기관별 구분할 경우 26건)이 확인되었음
- 부적정하게 처리된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기관장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코로나19 4단계 상황에서 연수동 운영재개’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있어 “기관장경고” 조치함
- 담당자 업무소홀, 관련 규정 미숙지 등에 기인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시행토록 하는 등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중에 있음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연번	처분요구 제목	관련기관	처분종류	조치할 사항	비고
1	연수동 운영 용역계약 및 관리감독 업무 소홀	서울혁신센터	주의 요구 (기관장경고)	(혁신센터) 2021년 연수동 운영재개를 결정 시 코로나19 상황 단계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용역 계약을 불필요하게 체결하여 예산 낭비 되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있어 경고 조치	
2	신규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시민협력국 (가과) 서울혁신센터	주의 요구 주의 요구	(가과) 혁신센터 채용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방법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혁신센터)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과반수 미만 운영, 합격자 기준 변경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지원자나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체척·기피 등을 안내하는 등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3	승진 및 승급 운영 부적정	시민협력국 (가과) 서울혁신센터	주의 요구 주의 요구	(가과) 혁신센터 직원승진 및 승급운영 시 절차적 하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 (혁신센터) 직원 승진 임용 시 관련 규정에 부합 하게 처리하고, 승급 제외 대상자에 대한 승급이 발생하지 않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4	조직 및 인력 운용 개선 필요	시민협력국 (가과) 서울혁신센터	주의요구·통보 통 보	(가과) 혁신센터 팀별 적정인원이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직 및 인력 운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 (혁신센터) 효율적 조직·인력 운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	
5	수탁사무에 대한 사무편람 부실 작성	시민협력국 (가과) 서울혁신센터	주의 요구 시정 요구	(가과) 혁신센터의 사무편람이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수탁사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 (혁신센터) 연수동 운영과 입주기업 및 단체 등이 사용료 등을 체납하는 경우 업무 처리사항을 정비 하는 등 사무편람을 현행화하도록 조치	
6	직원 복무위반 등에 대한 조치 미이행 부적정	서울혁신센터	주의 요구	(혁신센터) 징계의 대상으로 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7	출퇴근 근태 관리 운영 부적정	서울혁신센터	시정 요구	(혁신센터) 출퇴근 관련 카드미소지자·미체크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조치	
8	직원 휴가 운영 개선 필요	시민협력국 (가과) 서울혁신센터	통 보 주의 요구	(가과) 혁신센터 직원휴가가 타 민간위탁 기관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 (혁신센터) 보상휴가제 운영과 관련 시간외근무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연번	처분요구 제목	관련기관	처분종류	조치할 사항	비고
9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운용 부적정	시민협력국 (가과) 서울혁신센터	주의 요구 주의 요구	(가과) 혁신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 (혁신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10	예산사업 시행 시 추진계획 미작성	서울혁신센터	주의 요구	(혁신센터) 예산사업을 시행 시 사업의 필요성, 사업규모, 소요예산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11	가족수당 및 퇴직금 지급 부적정	서울혁신센터	시정 요구	(혁신센터) 가족수당 20천 원을 환수하고, 퇴직금 지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	
12	민간위탁금 지출증빙 업무 개선 필요	시민협력국 (가과)	통 보	(가과)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발급실태를 확인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지출증빙 발급 체계에 대한 구체적 구별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조치	
13	민간위탁사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에 대한 재검토 필요	시민협력국 (가과)	통 보	(가과) 수탁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해 재검토하여 민간위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하도록 조치	
14	공유재산 사용료 등 징수업무 부적정	서울혁신센터	주의 요구	(혁신센터) 혁신파크 內 공간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시설·장치 등을 확인,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가 누락되지 않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15	센터 내 시설공사 시행 부적정	서울혁신센터	주의 요구	(혁신센터) 단일공사로 시행할 수 있음에도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거나, 전기공사가 포함된 공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16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서 수입인지 첨부 누락	서울혁신센터	시정 요구	(혁신센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소인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	
17	물품관리 소홀	시민협력국 (가과) 서울혁신센터	주의 요구 주의 요구	(가과) 혁신센터의 물품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 (혁신센터) 물품의 구입·보관·사용 등 물품관리 전반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 규정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실시 등 조치	
18	대시민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 부적정	서울혁신센터	주의 요구	(혁신센터) 사업 수행 시 위·수탁 협약서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